

서울시 근로자의 사회복지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적십자 간전 논문집 제5권, 1983.

이 정 자

이상의 논술을 통하여 본연구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새마을 운동과 사회복지의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으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실제 상태는 대체로 미흡하고 형식화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비중을 높이는 일뿐만 아니라 내실화에도 더욱 역점을 주도록 하는 복지 강화책이 요청된다.

둘째, 사회복지의 시설적 측면으로서 기숙사, 식당, 휴게실, 도서실, 구내매점, 목욕탕 및 세탁실, 의료시설, 체육, 오락시설, 씨어클 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급여제도, 상여금제도, 근로자 저축제도, 휴가제도, 야간특별학급제도, 장학금제도, 통근 Bus 제도, 의료보험제도, 퇴직금제도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사실은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종업원 복지가 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주는 근로자의 참여와 이해 근로자 중심의 시설 및 제도운영으로 이의 내실화는 물론 기업체의 개별적 특수사정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 시설과 제도의 획일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의 미비요인은 주로 법제도의 미비 사용자의 이해부족 및 관심부족 경제적인 부담증대 기업체의 특성에 따른 입지적 조건등에 있으며 이의 해결 방안은 근로기준법의 보완과 아울러 사용자의 새마을 교육강화 및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 기업체간의 교류 증진등으로 공장새마을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넷째, 공장새마을 운동은 사회복지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그 전개과정이며 사회복지의 확충은 공장새마을 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장새마을 운동의 추진은 아직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에 국가정책의 추세에 맞추어 더욱 확충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업주는 기업체가 종업원에 의해 유지되며 종업원이 없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기업주와 근로자간의 공동 운명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여 실질적인 면에서 근로자 복지에 힘써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태조사 — 정기건강 진단결과를 중심으로 —

최 에 란

본 연구는 본법의 제정이후 최초로 실시된 1982년도 정기건강진단결과를 1982년 4월 30일 현재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께 몇가지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당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체는 총 81,136개소이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총 3,383,700명(남자 2,163,600명, 여자 1,220,100명)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부문이 전사업장의 44.6%, 근로자의 61.0%를 차지하고 있다.

2.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실시대사업체로 정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38.3%인 31,059개소에서 전체 근로자의 64.8%인 2,19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3. 보건진단대상업체 및 근로자중 실제수진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대상업체의 85.2%인 26,463개소에서 대상근로자의 91.5%인 2,007,091명이 응하였고 특수건강진단의 경우는 대상업체 3,013개소의 95.7%인 2,883개소에서 대상근로자 215,846명의 95.2%에 해당되는 205,497명이 응하였다.

4. 건강진단결과 수진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질병의 이환율은 3.9%, 직업병의 이환율은 0.3%로 나타났다.

5. 일반건강진단결과 70,200명이 일반질병에 이환되어 있어 3.5%의 이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광업에서 수진자 10,000명당 349.8명을 나타내 가장 높았다. 일반질병을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질병이라고 하면 산업별 차이가 일어나지 않아야만 할 것이나 광업에서의 절대적인 고이환율은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장애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특수건강진단결과 2.4%(5,002명)의 직업성질환자와 3.8%(7,859명)의 일반질환이환자가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대상자중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질환은 일반건강진단 결과 모두 발견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일반건강진단결과인 3.5%보다 특수건강진단결과의 일반질환이환율이 더 높은 3.8%를 보이고 있다.

7. 직업성질환의 이환자는 5,341명으로서 수진자 10,000명당 259.9명으로 나타났으며 종류별로는 광업에서의 녹폐증을 합하면 전직업성질환의 98.3%를 차지하였다.

근로자의 산업피로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